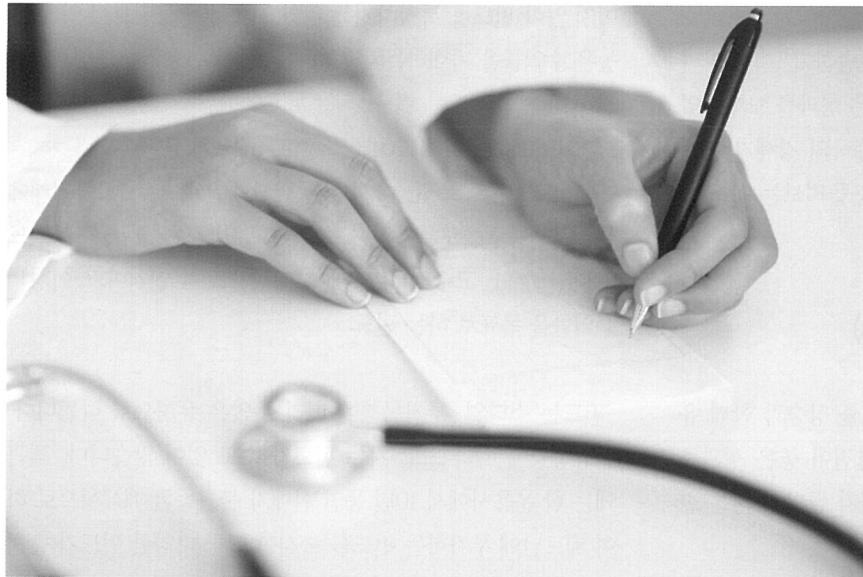


한두환 수의사 변호사의 법률칼럼 - 수의사의 생활법률 (23)

진단서의 발급과 그 주체

한 두 환
관악법률사무소
변호사
today-we@hanmail.net



김명의 수의사는 [24시명의동물병원]에 이견주씨가 반려견 순돌이를 데리고 내원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순돌이를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라 약물을 처방, 투약하였다. 이견주씨는 김명의 수의사에게 순돌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이견주씨가 자신의 진료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하기도 하였으며, 진단서를 발급해주면 혹시 나중에 순돌이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김명의 수의사는 진단서는 수의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므로 발급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견주씨와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일단 이견주씨는 진단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저녁 늦게 이견주씨는 다시 [24시명의동물병원]을 찾았다. 김명의 수의사가 퇴근한 후 진료를 보고 있던 박대진 수의사에게 이견주씨는 다시 순돌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박대진 수의사에게서 연락을 받은 김명의 수의사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으로 지시하였다. 박대진 수의사는 순돌이에 대한 진료부 기록을 보고 진단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김명의 수의사와 박대진 수의사는 각각 어떤 위법이 있을까?

진단서는 진료행위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지만, 진료를 하면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의사에게는 진단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발급해야 하는지 김명의 수의사와 박대진 수의사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자.

김명의 수의사의 경우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은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점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가 먼저 보호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명의 수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사후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진단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 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이 진단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대진 수의사의 경우

박대진 수의사는 자신이 직접 순돌이를 진찰한 것은 아니었으나, 김명의 수의사의 지시에 의해 김명의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기록을 보고 그 내용대로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 언뜻 생각하면 박대진 수의사의 경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수의사법]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진단서는 원칙상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다. 박대진 수의사는 순돌이를 직접 진료한 것이 아니라 진료부 기록만을 확인한 것으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

다만 위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동물병원의 다른 수의사가 발급해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만일 김명의 수의사가 퇴근 후 부재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박대진 수의사는 김명의 수의사를 대신하여 진단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的 의미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병원에서의 수의사 업무 현실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직접 진료한 수의사

가 항상 병원에서 대기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며, 진료부 상의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직접 진료한 수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위 단서 조항을 규정한 입법의 취지는 진단서 작성성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부득이한 사유”的 의미를 가능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김명의 수의사가 병원에 없는 상황에서 박대진 수의사가 대신 진단서를 작성한 것은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박대진 수의사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순돌이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지만, 이는 [수의사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박대진 수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대진 수의사가 순돌이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박대진 수의사는 이견주씨에게 진단서 발급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까?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은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담당수의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즉, 순돌이와 같이 박대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동물이 아닌 경우는 진단서 발급에 대한 의무

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박대진 수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진단서 발급을 거부해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진단서의 중요성

진단서는 자신의 진료에 대한 수의사로서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작성한 수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도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수의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만큼, 반대로 수의사에게는 진단서 발급 의무도 존재한다. 이 때 대상은 직접 진료한 동물에 한정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